

경기규정

전부개정 2019. 11. 16.

개정 2020. 11. 1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기에 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카누경기에 적용된다.

제2장 스프린트경기규칙

제3조(경기규칙) 국제카누연맹 경기규칙에 따르되 경기규칙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① 예선은 추첨으로 조 및 레인을 정하고, 준결승과 결승은 전 경기 순위에 따라 조를 배정하고, 레인은 성적순으로 가운데 라인부터 5, 4, 6, 3, 7, 2, 8, 1, 9 라인 순으로 배정한다.

② 참가접수 마감 이후의 선수교체는 대회 대표자회의에서 가능하며, 기권 선수는 기권사유서(증빙자료 필요 시)를 제출하도록 한다. 기권사유서를 제출한 선수는 해당 대회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없고(일부 종목 기권 신청 불가), 기권처리 선수와 동일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기권처리하지 않으며 다른 참가 신청된 종목에 출전 할 수 있다. 또한 참가신청 이후 무 통보 기권한 선수는 해당 대회에서만 전 종목 실격처리 된다. 단, 대회 기간 중 부득이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선수교체는 해당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진단서를 제출하

여야 하며 경기위원회의 심의 후 동일종목에 등록된 후보 선수와 교체할 수 있고 등록 후보 선수가 없을 시 기권처리 하도록 한다.

③ 출전선수는 해당경기 시작 3분전에 출발선상 50m 이내에 대기한다.

④ 대기선상에 있는 보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정시간에 늦을 경우 실격(무통보 기권)으로 한다.

⑤ 팀 보트에서는 유니폼 상하의 길이, 모자 머리띠 및 스프레이커버를 포함하여 모든 참가선수들이 통일성 있어야 한다.(단, 스프레이커버에 한하여 1번 선수 착용 시 전 선수 동일 착용, 1번 선수를 제외한 2번 선수가 착용 시 3번, 4번 선수는 반드시 동일 착용, 2번 선수가 미착용 시 3번, 4번 선수는 착용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실격 조치한다.)

⑥ 모든 선수는 실제 경기 진행 시 소속팀 관계자 및 타인과의 피드백을 위한 장비 시계 및 무전기, 메가폰(전자기기) 등 사용을 불허하며 이를 위반시 실격 조치 한다.(단, 부저 및 나팔, 휘슬 등은 사용가능하다.)

⑦ 출발신호는 "Ready - Set - Go(준비 - 정지 - 출발)"후 출발신호음 또는 메가폰 육성으로 한다.

⑧ 스타트 심판은 부정출발 1번 경고 후 2차시는 실격시키며, 출발 정위치 지시를 위반 시는 2차 경고 후 3차시는 실격(무통보 기권 처리)시킨다.

⑨ 경기장 자기코스(레인)를 이탈할 때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. 선수는 경기 중 가능한 한 레인 중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, 자신의 항로를 유리하게하기 위해 다른 선수에게 5m 이내로 접근하여 진행한다고 판단되면 경고 또는 실격 조치한다.

⑩ 경기정 전복 시 외부의 도움 없이 다시 승선하여 경기하면 유효하다. 정원이 승선한 경기정의 이물이 결승선에 도달하면 골인으로 간주한다.<삭제> 경

기정의 이물이 결승선에 도달한 후 전복되어 타경기정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.

⑪ 입상자는 승선한 채로 반드시 지정된 퇴정 폰툰으로 퇴정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실격 조치한다.

⑫ 검정(Boat Control)은 대회개시 전 경기장에 준비된 저울로 자울 검정하고, 매 경기직후 호명된 선수는 검정(Boat Control)을 반드시 실시한다.

⑬ 동타임일 경우 비디오로 판정하고 판정 불가시 입상순에 따라 동물로 결정한다.

⑭ 모든 이의신청(항의)은 이의 신청금 30,000원과 함께 서면으로 감독(코치)이 하되, 경기 결과 발표 후 20분 이내까지 허용되며, 그 이후의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. 이의 신청이 인정되면 이의 신청금은 환불된다.

⑮ 서면 이의 신청 외에 선수 및 감독, 코치 팀 관계자의 비신사적인 언행 및 행위 시는 경기 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할 수 있다.

⑯ 스타트 심판 및 정렬 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허한다.

⑰ 중학부, 고등부, 동호인부, 수영 미숙자는 반드시 구멍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시킨 구멍조끼를 착용할 수 없고, 제작원형 그대로의 구멍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 시 실격처리 한다.

⑱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기 레인의 경기정 번호판을 반드시 통제소에서 배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. 통제소를 거치지 않거나 통제소에서 번호판 배부 시 연맹에서 발급된 선수등록증(미 지참 또는 분실 시 경기 전 1시간 전까지 경기위원장이 서명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실격시키지 아니한다.)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어길시 실격 조치한다.

⑲ 출전종목 초과 신청 등 요강에 위배되는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참가팀에 전

적인 책임을 물어 전 종목 실격 처리되며, 경기 이후라도 이러한 문제 발견 시 전 종목 실격 처리한다.

⑳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4조(대회불참) 국내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참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.

① 불참한 선수 및 대회 기권 선수는 해당 대회 모든 출전종목에서 실격(기권) 조치한다.

② 제5조로 인하여 불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불참인정)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대회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회 불참을 인정한다.

① 불참사유가 부상이나 질병일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적인 사유 (예: 상고, 신검 등)로 인하여 불참할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소속 단체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회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기권할 경우 당해경기 출발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소속 감독명의로 해당대회 경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내대회 참가 신청 후(소년체전, 전국체전 제외)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(청소년, 후보선수포함) 훈련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한하여 해당 소속팀의 선수교체가 해당대회의 대표자회의전에 가능하도록 한다.(해당 세부종목에 후보 선수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팀 타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. 단 1인 2종 위배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)

제3장 슬라럼경기규칙

제1조(경기규칙) 국제카누연맹 경기규칙에 따르되 경기규칙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, 급류 경기와, 장애물 정수 경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- ① 출전선수는 해당경기 시작 5분전에 출발선상 50m 이내에 대기한다.
- ② 대기선상에 있는 보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정시간에 늦을 경우 실격(무통보 기권)으로 한다.
- ③ 출발신호는 "Ready - Set - Go(준비 - 정지 - 출발)"후 출발신호음 또는 메가폰 육성으로 한다.
- ④ 스타트 심판은 부정출발 1번 경고 후 2차시는 실격시키며, 출발 정위치 지시를 위반 시는 2차 경고 후 3차시는 실격(무통보 기권 처리)시킨다.
- ⑤ 참가접수 마감 이후의 선수교체는 대회 대표자회의에서 가능하며, 기권 선수는 기권사유서(증빙자료 필요 시)를 제출하도록 한다. 기권사유서를 제출한 선수는 해당 대회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없고(일부 종목 기권 신청 불가), 기권처리 선수와 동일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기권처리하지 않으며 다른 참가 신청된 종목에 출전 할 수 있다. 또한 참가신청 이후 무통보 기권한 선수는 해당 대회에서만 전 종목 실격처리 된다.
- ⑥ 출전 팀 선수의 경우 유니폼 색상, 소매길이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, 위반시 실격 조치한다.
- ⑦ 경기에서 보트가 뒤집어져서 선수가 보트를 완전히 떠났을 때를 전복으로 간주하고 실격처리 한다. 단 에스키모 롤은 전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- ⑧ 검정(Boat Control)은 대회경기위원회에서 보트 무게와 길이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.
- ⑨ 동 기록일 경우 판정은 2라운드 경기 중 기록이 좋은 쪽을 승자로 한다.

- ⑩ 모든 이의신청(항의)은 이의 신청금 30,000원과 함께 서면으로 감독(코치)이 하되, 경기 결과 발표 후 20분 이내까지 허용되며, 그 이후의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. 이의 신청이 인정되면 이의 신청금은 환불된다.
- ⑪ 서면 이의 신청 외에 선수 및 감독, 코치 팀 관계자의 비신사적인 언행 및 행위 시는 경기 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할 수 있다.
- ⑫ 스타트 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허한다.
- ⑬ 모든 선수는 반드시 구명조끼 및 헬멧(정수 경기제외)을 착용하여야하고, 임의로 변형시킨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 할 수 없고, 제작원형 그대로의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 하여야 한다. 이를 어길시 실격 조치한다.
- ⑭ 경기는 2번의 경기를 실시한다. 2번의 경기 중 기록이 가장 좋은 기록으로 등위를 결정한다.
- ⑮ 코스는 스타팅 라인부터 피니쉬 라인까지 250m 이상 400m 이하로 한다.
- ⑯ 코스 게이트는 최소 18개에서 최대 25개의 게이트로 운영하며 그 중 역 게이트(업스트림)는 최소 6개를 설치 운영한다.
- ⑰ 피니쉬 라인을 넘으면 끝이 난다. 전복되어 통과하면 실격되며 패들도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.
- ⑱ 도핑에 의한 실격은 경기를 끝낸 선수라도 실격될 수 있다.
- ⑲ 모든 선수는 실제 경기 진행 시 소속팀 관계자 및 타인과의 피드백을 위한 장비 시계 및 무전기, 메가폰(전자기기) 등 사용을 불허하며 이를 위반시 실격 조치 한다.(단, 부저 및 나팔, 휘슬 등은 사용가능하다.)

제2조(패널티)

① 0점 패널티

- 실수 없이 바르게 통과 했을 때

② 2점 페널티

- 게이트를 바르게 통과 했지만 하나나 양쪽 폴에 닿았을 경우(같은 혹은 양쪽 폴에 반복해서 닿았을 경우 오직 한 번의 페널티만 인정한다)

③ 50점 페널티

- 올바른 통과 없이 게이트(폴1개나 2개)에 닿았을 때

- 통과를 위해 게이트를 고의적으로 밀었을 때(이미 선수의 보트와 신체가 게이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을 때 게이트를 미는 것은 심판하지 않는다.

- 신체가(C2에서는 두 선수 중 한명이) 게이트 라인을 업사이드 다운해서 넘었을 때

-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머리의 어떤 부분도 잘못된 방향으로 게이트 라인을 넘지 않았을 때

- 머리 부분이 폴 사이의 라인을 보트의 부분 없이 넘었을 때

- 게이트 생략

- 게이트의 양 폴 사이 안에서 머리 부분이 닿을 때

제3조(장애물 정수) 장애물 정수 경기 규정은 연맹이 정한 별도의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제4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4장 드래곤보트경기규칙

제1조(경기규칙) 국제카누연맹 경기규칙에 따르되 경기규칙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① 출전팀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심판

과 경기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② 선수들은 각 팀당 팀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 본부 측과의 의사 전달은 팀장으로만 한정 한다.

③ 예선은 추첨으로 조 및 레인을 정하고, 준결승과 결승은 전 경기 순위에 따라 조를 배정하고, 레인은 성적순으로 가운데 라인부터 3, 4, 2, 5, 1, 6 라인 순으로 배정한다.

④ 참가접수 마감 이후의 선수교체는 대회 대표자회의에서 가능하며, 기권 선수는 기권사유서(증빙자료 필요 시)를 제출하도록 한다. 기권사유서를 제출한 선수는 해당 대회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없고(일부 종목 기권 신청 불가), 기권처리 선수와 동일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기권처리하지 않으며 다른 참가 신청된 종목에 출전 할 수 있다. 또한 참가신청 이후 무 통보 기권한 선수는 해당 대회에서만 전 종목 실격처리 된다. 단, 대회 기간 중 부득이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선수교체는 해당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위원회의 심의 후 동일종목에 등록된 후보 선수와 교체할 수 있고 등록 후보 선수가 없을 시 기권처리 하도록 한다.

⑤ 출전 팀 선수의 경우 유니폼 색상, 소매길이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실격 조치한다.

⑥ 출전선수는 자신의 경기시작 30분전에 통제소 앞에 집합하여야 하며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승선을 완료 하여야 한다.

⑦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은 신속히 하선하여 다음 출전 팀에게 배를 인도해야 한다. 경기종료 10분 안으로 계류장에 접안을 하여야 한다.

⑧ 경기 거리는 200m, 500m, 1000m로 하도록 한다.

⑨ 모든 이의신청(항의)은 이의 신청금 100,000원과 함께 서면으로 감독(코치)

이 하되, 경기 결과 발표 후 20분 이내까지 허용되며, 그 이후의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. 이의 신청이 인정되면 이의 신청금은 환불된다.

⑩ 모든 선수는 실제 경기 진행 시 소속팀 관계자 및 타인과의 피드백을 위한 장비 시계 및 무전기, 메가폰(전자기기) 등 사용을 불허하며 이를 위반시 실격 조치 한다.(단, 부저 및 나팔, 휘슬 등은 사용가능하다.)

제2조(최소참가) 국내 대회일 경우 최소 2개 팀에서 3척 이상의 경기정이 참가 하여야만 경기가 성립된다.

제3조(경기진행)

① 준비 신호 시 모든 팀은 키(방향타)외에 물에 넣어서는 아니 되며 북 또한 치지 아니 한다. 위반 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며 재차 위반 시 실격 조치한다.

② 출발신호는 "Ready - Go(준비 - 출발)"후 출발신호음 또는 메가폰 육성으로 한다.

③ 만약 기술적 이유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, 북 잡이는 스틱을 들고 두 손으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야 한다.

④ 출발 신호가 끝나기 전에 패들링을 한다면 부정 출발이다. 경기는 중지되며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.

⑤ 부정출발 후 예선조의 모든 선수들은 경고를 받을 것이다. 같은 예선전에서 2회 부정출발을 했다면 2회 부정출발을 야기한 선수는 실격이다.

⑥ 부정출발 신호 후 돌아오지 않는 팀은 탈락한다.

⑦ 적정한 출발은 발정원이 신호와 동시에 흰색 깃발을 올리는 것이다.

⑧ 드래곤보트는 한쪽에 블레이드가 있는 패들만을 사용하여 전진하여야 한다.

- ⑨ 패들은 배에 고정되어서는 아니 되며, 경기정의 방향을 잡기 위한 키 패들은 예외로 한다.
- ⑩ 패들링은 앉아있는 자세에서 하여야 한다.
- ⑪ 정당한 코스에 있는 배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로 인한 충돌·전복 등의 사고 발생 시 코스심판 및 해당 대회 경기위원회의 협의 하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팀을 실격시키고 피해 팀을 복원시킨다.
- ⑫ 경기 중 선수들의 부주의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주최 측은 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⑬ 경기 코스에서 심한 이탈이 생길 경우, 두 번의 조정 주문을 받을 것이고, 이후에 마지막으로 경고를 받게 된다. 경고 후에도 이탈할 경우 코스심판에 의해 리포트를 받은 해당 경기 위원회에 의해서 해당 팀은 실격될 것이다.
- ⑭ 코스심판은 예기치 아니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경기의 중지권을 가진다. 코스심판은 이 경우 붉은 깃발과 소리 신호로써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.
- ⑮ 경기위원회는 새 경기를 위한 출발 시간을 결정한다.
- ⑯ 정원이 승선한 경기정 용머리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피니쉬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⑰ 결승선을 통과할 때 이상이 없는 경기로 확인이 되었다면 심판은 흰 깃발을 올리고 이상이 있다면 빨간 깃발로 신호를 한다.
- ⑱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4조(경고)

- ① 선수가 출발 시에 늦게 도착 하였을 때,
- ② 선수가 경기 중 레인을 벗어났을 때,

- ③ 선수가 임원들의 지시를 어겼을 때,
- ④ 선수가 부정 출발을 야기 하였을 때,
- ⑤ 선수가 그릇된 스포츠 정신 또는 벗어난 행동으로 경기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,
- ⑥ 선수가 두 번의 주문을 받고도 코스를 이탈할 경우,
- ⑦ 선수는 경기 중 두 번 경고를 받으면 실격 처리 된다.

제5조(실격)

- ① 경고 후에도 출발을 지연했을 때,
- ② 2번의 부정출발을 야기했을 때,
- ③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하거나 경기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했을 때,
- ④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.
- ⑤ 경기위원회는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선수나 임원들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- ⑥ 참가선수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하고 임의로 변경시킨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없고, 제작원형 그대로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 시 실격처리 한다.
- ⑦ 도핑에 의한 실격은 경기를 끝낸 선수라도 실격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5장 SUP경기규칙

제1조(경기규칙) 국제카누연맹 경기규칙에 따르되 경기규칙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① 참가접수 마감 이후의 선수교체는 대회 대표자회의에서 가능하며, 기권 선수는 기권사유서(증빙자료 필요 시)를 제출하도록 한다. 기권사유서를 제출한 선수는 해당 대회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없고(일부 종목 기권 신청 불가), 단, 대회 기간 중 부득이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선수교체는 해당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 기권처리 하도록 한다.
- ② 수상 출발은 보드에서 서있는 자세, 무릎을 꿇은 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출발하며 육상출발은 선 자세로 출발한다.
- ③ 출전선수는 해당경기 시작 3분전에 출발선상 50m 이내에 대기한다.
- ④ 대기선상에 있는 보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정시간에 늦을 경우 실격(무통보 기권)으로 한다.
- ⑤ 모든 선수는 실제 경기 진행 시 소속팀 관계자 및 타인과의 피드백을 위한 장비 시계 및 무전기, 메가폰(전자기기) 등 사용을 불허하며 이를 위반시 실격 조치 한다.(단, 부저 및 나팔, 휘슬 등은 사용가능하다.)
- ⑦ 출발신호는 "Ready - Set - Go(준비 - 정지 - 출발)"후 출발신호음 또는 메가폰 육성으로 한다.
- ⑧ 스타트 심판은 부정출발 1번 경고 후 2차시는 실격시키며, 출발 정위치 지시를 위반 시는 2차 경고 후 3차시는 실격(무통보 기권 처리)시킨다.
- ⑨ 보드 전복 시 외부의 도움 없이 다시 승선하여 경기하면 유효하다. 보드 이물이 결승선에 도달한 후 전복되어 타경기정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.
- ⑩ 동 기록(100분의 1초 확인)일 경우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판정하고 판정 불가시 입상 순에 따라 동물로 결정한다.
- ⑪ 모든 이의신청(항의)은 이의 신청금 30,000원과 함께 서면으로 감독(코치)

이 하되, 경기 결과 발표 후 20분 이내까지 허용되며, 그 이후의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. 이의 신청이 인정되면 이의 신청금은 환불된다.

⑫ 서면 이의 신청 외에 선수 및 감독, 코치 팀 관계자의 비신사적인 언행 시 경기 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할 수 있다.

⑬ 스타트 심판 및 정렬 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허한다.

⑭ 참가 선수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시킨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없고, 제작원형 그대로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 시 실격처리 한다.

제2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대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6장 도핑방지규정 위반 조치

제1조(도핑검사 및 도핑방지규정 위반선수 조치 등) ① 전국체육대회, 전국소년체육대회,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으로 확정된 도핑방지규정 위반선수(이하 “위반선수”라 함)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의 기록을 박탈하며 입상메달과 상장을 참가한 시·도종목단체를 통해 반납하고 차기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. 다만, “견책”은 차기대회는 출전할 수 있다.

③ 위반선수가 소속한 팀에 대해서도 위반선수가 얻은 점수 등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.

④ 위반선수가 박탈당한 메달, 상장, 점수 등 모든 지위를 재계산하여 다른 선수(팀)에 승계한다.

- ⑤ 단체종목(2인승 이상)에 있어서 팀의 소속 선수가 대회기간 중 위반선수일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결과조치와 함께 위반선수가 참가한 단체종목의 기록 박탈, 입상메달과 상장 회수하며 차기대회는 위반선수만 출전을 금지한다.
- ⑥ 제5항에 해당되는 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제4항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**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1999. 4.28)
-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0. 4.21)
 - ③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3. 5.31)
 - ④ 본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4. 3.23)
 - 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4. 4.20)
 - ⑥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6. 3.10)
 - ⑦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0. 6.23)
 - ⑧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2. 1.13)
 - ⑨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3. 1. 7)
 - ⑩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3. 3.23)
 - ⑪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3.12.19)
 - ⑫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5. 3.30)
 - ⑬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6. 2.24)
 - ⑭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7. 9. 7)
 - ⑮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8. 3.15)
 - ⑯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9.11.16.)

⑰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20.11.10)